

한-싱가포르 FTA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개념

불공정 무역관행

-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 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무역구제조치

-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반덤핑(덤핑방지, Anti-Dumping)관세조치

- 개념

-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 및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상계관세조치

- 개념

-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 √ 국내산업을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 국내산업을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 √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란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해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를 말합니다(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 √ 국제수지의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말

합니다(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 √ 미리 정해진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FTA 용어집).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개념

반덤핑(덤핑방지, Anti-Dumping)관세조치

-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 및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보호대상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 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부과요청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
- 위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반덤핑관세 신청자격).

-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덤핑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조사신청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전단).

-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반덤핑관세 조사신청서 3부(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무역위원

회 서식)

-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 해당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 해당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 √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후단).

조사신청의 철회

-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의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따라 납부된 잠정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의 개시결정

- 조사개시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 조사신청의 기각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덤프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덤프차액 또는 덤프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덤프차액: 덤프가격의 2/100 이상

나. 덤프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

√ 해당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50/100 이하

나.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25/100 미만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결정통지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예비조사

예비조사 기간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 예비조사 기간 연장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
-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후단).

반덤핑관세 부과 및 잠정조치 등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 반덤핑관세 부과
- 잠정조치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약속의 제의

-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로에게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이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이라 한다)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자를 지정해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판정하기 전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 수출자에 의한 제의
 -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 그 밖의 상황 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약속의 수락

-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불수락 요건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해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
- 조사 후 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본문).
 -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단서).

약속 미이행 시 조치

-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제68조제6항 단서).

@본조사

본조사 개시

-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 본조사 기간의 연장

-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 자료협조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를 위한 조사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질의서 발송일 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조사·판정의 근거

-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 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 근거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 통산(누적)평가

-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누적적(통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인 경우

나.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하는 경우

- √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본조사 결과 제출 및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 본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결정의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개시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 단서).

#반덤핑관세의 부과

@잠정조치

개념

-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반덤핑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제24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요건

-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적용기간
 -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단서).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잠정반덤핑관세 환급 등

- 잠정반덤핑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2항).

-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차액의 환급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액이 잠정반덤핑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반덤핑관세액이 잠정반덤핑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3항).

- √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관세법」 제55조 단서)
- √ 다음과 같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관세법」 제55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 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 라.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마.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 제외)
- 바.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반덤핑관세의 부과

관세산출방법

- 반덤핑관세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정률세 부과방법: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한 금액

$$\sqrt{\text{덤핑률}} = (\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 / \text{과세가격} \times 100$$

- 기준수입가격 부과방법: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에서 결정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해 산출한 금액

부과방법

-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반덤핑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의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가중평균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가중)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자료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단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가중평균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

격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후단).

√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2/100 미만인 공급자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 지정된 공급국에 대한 부과

- 공급국을 지정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이하 “신규공급자”라 한다)가 반덤핑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이하 “기존공급자”라 한다)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신규공급자에게도 기존공급자와 같은 반덤핑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라.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바. 입양자의 생가(生家) 직계존속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 직계비속
-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본문).

부과시기

-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55조 본문).

소급부과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5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 √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 제외)
- √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해당 물품이 반덤핑관세 소급적용 대상물품이라는 증거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반덤핑관세의 소급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반덤핑관세의 재심사

재심사여부 결정

- 반덤핑관세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실제 덤핑차액보다 반덤핑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반덤핑관세율 및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 이를 위해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에 관해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재심사의 요청

- 재심사는 다음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전단).

- 반덤핑관세의 부과일 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
- 반덤핑관세 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후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전단).

통지

- 재심사의 필요여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후단).

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전단).
-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후단).

종결

-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본문).
-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4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단서).

재심사에 따른 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
-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반덤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개념

상계관세조치

-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 “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등” 이라 한다)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보호대상

-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 √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부과요청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

- 위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조사신청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무역위원회 서식)

-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 해당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사항
- √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증빙자료

조사신청의 철회

-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조사의 개시결정

- 조사개시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 조사신청의 기각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 에 미달된 경우

√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동종 물품 국내 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50/100 이하인 경우

나.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25/100 미만인 경우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결정통지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개시일 최소 10일 전에 조사개시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1항).

@예비조사

예비조사 기간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 예비조사 기간 연장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본

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 등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 잠정조치
- 상계관세부과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상계 약속의 제의

-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등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한다)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해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 의한 제의

- 수출국 정부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이 변동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 상계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

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약속의 수락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 불수락 요건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해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

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본문).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단서).

- 조사 후 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약속 미이행 시 조치

-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6항 단서).

@본조사

본조사 개시

-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 본조사 기간의 연장

-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 자료협조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여

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

-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조사·판정의 근거

-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

는지 여부 포함)

- √ 보조금등의 금액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 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근거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 통산(누적)평가

-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통산(누적)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100(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이상인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본조사 결과 제출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

-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 본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 75조제7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단서).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항 단서).

#상계관세의 부과

@잠정조치

개념

-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제24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요건

-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 적용기간
 -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잠정상계관세 환급 등

- 잠정상계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본문).

-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차액의 환급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단서).

- √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관세 산출방법

-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과세가격 × 100

부과방법

-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단서).

-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의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부과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게는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에 가중)에 의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전단).

·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의 자료 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에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

·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100 미만인 수출자는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후단).

- 지정된 수출국에 대한 부과

· 수출국을 지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이하 “신규수출자” 라 한다)가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되는 수출자(이하 “기존수출자” 라 한다)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신규수출자에게도 기존수출자와 같은 상계관세율을 적용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수출자 및 기존수출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수출자 및 기존수출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 신규수출자 및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 신규수출자 및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 신규수출자 및 기존수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바. 입양자의 생가(生家)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단서).

부과시기

-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61조 본문).

소급부과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1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 √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 √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 제외)
- √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해당 물품이 상계관세 소급적용 대상물품이라는 증거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상계관세의 소급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상계관세의 재심사 등

재심사여부 결정

- 상계관세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2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 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나.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실제 보조금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상계관세율 및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이를 위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에 관해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재심사의 요청

- 재심사는 다음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전단).
 -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
 -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후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전단).

조사

-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전단).
-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후단).

종결

-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본문).
-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

재심사에 따른 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단서).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9항).
-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9항).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FTA 용어집).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요건 및 내용

요건

- 한·싱가포르 FTA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1항).
 -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같은 종류 또는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 √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가호)
- √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나호)
- √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생산자 전체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총생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다호)

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단).
 -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의 협정관세 세율을 계속해 적용하는 조치(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혜국세율 적용)
 -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기 전날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난 때에는 협정관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후단).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

조사절차

- 신청
 -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 조사개시 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 조사

-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무역위원회는 같은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 수준 등의 변화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 조사여부 결정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
- √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 계약상대국 정부에 대한 통보
- √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3항).

- 조사기간

- 조사는 모든 경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

잠정조치 시행 건의

-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간

-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7항).

관세의 환급

-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7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관세법」 제66조제3항).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건의

-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

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산업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 받은 경우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후단).
- 체약상대국과의 사전협의
 -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 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조치기간

-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은 잠정긴급관세 조치기간(잠정긴급관세 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6.4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단서).

재심사

-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체약상대국이 시행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협약

-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대항조치

- 보상방법 등에 관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 기간

- 대항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8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의 종류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를 조정하는 조치 외에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구별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싱가포르 FTA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1항).